

의 정 정 보

2010 - 11호 11. 10.

| | | |
|------------------------------|-------|----|
| 1.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 | 1 |
| 2.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25 |
| 3.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 | 72 |
| <참고1> : 2010년 광역시·도 제정조례안 현황 | | 87 |
| <참고2> : 행복한 책 읽기 | | 90 |

▣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 | | |
|------------------------------|---|----|
|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 | 2 |
| 2. 지방자치법 시행령 | — | 14 |
| 3.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 | 15 |
| 4.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19 |
| 5. 법제업무 운영규정 | — | 21 |
| 6.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 | 22 |
|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23 |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2471호, 2010.11. 2, 제정】

1. 제정이유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윤리적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의 불신이 높은 실정이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이행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의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등을 직무관련자로 정함(안 제2조).

- 나. 지방의회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거나 본인 및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지방의회의원은 사전에 지방의회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
- 마.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5조).
- 바. 지방의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
- 사. 누구든지 지방의회의원이 의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9조).

아.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등은 지방의회의장이 관장하도록 하되, 지방의회의장의 행동강령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2011. 2. 3] [대통령령 제22471호, 2010.11. 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선출된 교육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

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은 의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제12조(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지방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제1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제20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부칙<대통령령 제22471호, 2010.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68호, 2010.11. 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7월 1일부터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시·도의회 소속이 아닌 종전의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를 갈음하여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

사무의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두는 부시장 2명 중 1명은 지방 이사관, 별정직 2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경기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66호, 2010. 6.10, 제정】

1. 제정이유

현행법상 동산과 채권의 경우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민법」상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을 담보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법 제3조 및 제34조)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담보권설정자의 자격(법 제3조, 제4조, 제34조 및 제37조)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 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다. 근담보권(법 제5조 및 제37조)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경우에도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설정된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라.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 의무(법 제6조 및 제37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명시하도록 함.

마. 담보등기의 효력(법 제7조 및 제35조)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가 행하여진 경우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르도록 함.

2) 채권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

바. 담보권의 효력(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제37조)

1)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 및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인도 청구 후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담보목적물의 과실(果實)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도록 함.

2)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뿐만 아니라 매각, 임대인 경우에도 물상대위권(物上代位權)을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담보목적물 점유침탈(占有侵奪) 등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사. 담보권의 실행(법 제21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외에 취득정산, 처분정산의 실행방법을 인정하되, 취득정산 및 처분정산의 경우에는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후 담보권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자에게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를 부여하며, 다만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담보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고, 공동담보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담보권자의 다른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도록 하여 각 담보목적물의 후순위담보권자를 보호함.

아. 담보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의 신청 및 등기신청의 접수 (법 제38조, 제41조 및 제45조)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연장에 대하여 하고,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등은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

자. 담보등기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법 제49조)

피담보채권의 대부분이 상사채권이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권도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담보등기에 관하여 연장등기할 수 있도록 함.

차. 지적재산권담보권의 등록 및 그 효과(법 제58조 및 제59조)

지적재산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公的) 장부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질권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57호, 2010.10.21, 제정】

1. 제정이유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366호, 2010. 6. 10. 공포, 2012. 6. 11. 시행)됨에 따라 동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려는 경우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할 내용 및 그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안 제2조)

무기명채권증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하여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나.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통지(안 제3조)

- 1) 동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려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뜻을, 담보목적물이 여러 개일 때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 2)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경우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담보권자가 과실 없이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6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2427호, 2010.10. 5,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부입법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기능을 보완하며, 일정한 경우에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입법계획 수립 시기 조기화(안 제5조 및 제8조)

- 1) 각 부처 입법계획이 매년 1월 중 법제처장에게 제출되고 이를 취합·검토·조정하여 정부입법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그 전에 수립되는 부처업무계획에서 입법계획이 신중하게 검토되기 어렵고 연초에 입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2) 법제처장은 부처입법계획의 작성방법 등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3) 부처업무계획 수립 시 입법계획이 검토되어 정책과 입법이 연계되는 한편, 법률안이 신속하고 연중 고르게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협의사항 및 위원 추가(안 제12조의2)

- 1)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도 정부입

법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정책협의회 위원으로 특임장관 소속의 고위공무원을 추가함.

- 2) 국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의결 결과에 대해서도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신속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민원인의 법령해석제도 이용절차 보완(안 제26조제9항 신설)
- 1)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통해서만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을 받을 수 있어,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인의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을 받을 수 없음.
 - 2) 민원인은 법령해석요청을 의뢰받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법령해석기관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3)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권한을 존중하면서도 민원인은 신속하게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42호, 2010.10.14,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업무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427호, 2010. 10. 5. 공포·시행)되어 일정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

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요청방법을 정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요 법률안이 폐기 또는 보류되거나 그 시행일 등이 변경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규칙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83호, 2010.11. 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초지 및 농경지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액비 생산기술의 발달에 따라 액비화시설의 가축분뇨 저장기간을 단축하며, 그 밖에 행정제재 처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비 살포에 필요한 초지 및 농경지의 의무 확보 면적 기준 및 확보 의무 대상 완화(안 별표 1)

- 1)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 중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초지 및 농경지

의 면적 기준과 의무 대상자의 범위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축산농가 등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음.

- 2) 가축분뇨의 발생량이 감소하고 액비 생산기술의 발달로 액비에 함유된 질소·인 등의 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액비 살포에 필요한 초지 및 농경지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소와 말의 경우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자원화하는 농가가 없으므로 액비 살포에 필요한 초지 및 농경지의 면적 기준을 삭제함.

- 나. 액비화시설의 가축분뇨 저장기간 단축(안 별표 2 및 별표 8)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액비 생산기술의 발달로 액비화 공정과 기간이 단축되고 액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저장조의 용량을 4개월 이상으로 단축함.

- 다. 액비의 살포기준 완화(안 별표 4)
액비 생산기술의 발달로 액비의 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이 줄어들어 액비 살포 금지구역을 주거시설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 100미터 이내로 완화함.

- 라.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안 별표 5)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제재 처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
|---|----|
| 1.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14 |
| 2.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19 |
| 3.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안 | 24 |
| 4.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5 |
| 5.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38 |
| 6.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 48 |
| 7. 경기도의회 증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 53 |
| 8.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56 |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25 |
|----------|-----|

발의년월일 : 2010년 10월 6 일

발 의 자 : 이미성,이상호,고만규
강감창 의원 외 8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민의 장기등 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등 서울시민의 활발한 장기등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서울시민 서로 간에 사랑의 실천운동을 통하여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 신설의 목적을 명기(안 제1조)
- 나. 적용범위의 규정(안 제2조)
- 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안 제3조)
- 라. 시장은 “서울특별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4조)
- 마.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을 규정(안 제5조)
- 바. 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사. 위원회 임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제9조)
- 아. 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자.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차. 장기등기증운동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라 함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의 접수와 신청내용을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이첩하기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건 관련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3급 이상 공무원
3. 종교단체 지도자
4.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이 추천한 자
5. 직능단체장
6. 관련 시민단체 대표

7.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8. 기타 장기등기증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이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기증운동 홍보 관련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3장 장기기증 접수창구

- 제10조(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장기기증 접수창구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예우 및 지원

-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장기등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20명 이내의 장기등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장기등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장기등기증운동 티브이(TV) 공익광고 출연
 2. 장기등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3. 장기등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 ③ 시장은 위촉된 장기등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24 |
|----------|-----|

발의년월일 : 2010년 10월 6 일

발 의 자 : 김기옥, 박양숙의원
외 16명

1. 제안이유

가.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인식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도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등)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내 흡연을 금지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였으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금연'권장'구역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

나.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8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각 대상구역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음.

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은 서울특별시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임.

1-1. 수정이유

- 당초 조례안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집행부의 시행규칙 정비 등 준비를 위하여 2011년 3월 1일로 시행일시를 변경하였음.

2. 주요내용

- 가. 흡연과 간접흡연의 용어를 정의(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열거주의를 채택 하여 시장의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는 곳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지정의 방법을 시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라. 금연구역에서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함(안 제7조).
- 마.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0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발의년월일 : 2010. 08.

발 의 자 : 배 지 숙 의원
송 세 달 의원
도 재 준 의원
(찬성의원 7인)

1. 제정이유

- 가.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나. 동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서는 신고의무자를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아동보호에 참여하게 하고 있으며,
- 다. 동법 제29조(금지행위)에서는 아동학대 등의 예를 열거하여 그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 라. 동법 제2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보호, 그 가정에 대한 원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마.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예방과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아동보호 관

계기관 간 협력체계구축과 일선 교원과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매 5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보호기본정책방향, 교육홍보, 재원의 조달방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 내지 안 제7조).
- 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내지 안 제11조)
- 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제14조)

- 바.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와 보호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5조)
- 아.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책임과 의무를 명백히 하고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운영·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만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함은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대구광역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의 보호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 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행위의 금지) 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이나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을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5조 (아동학대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조례 제2조 3호 및 4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교직원 및 종사자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10. 「모·부자 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시설의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6조(아동학대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의 아동학대예방과 방지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기본정책방향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촉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아동학대예방교육)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

여 청소년단체,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기관 등의 종사자를 포함한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조기발견방법을 포함한 신고와 상담 등의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포함한 신고와 상담 등의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이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시책에 관한 사항
 -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보호 관련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대구광역시 아동보호 관련 담당국장
 - 2. 대구광역시 교육청 아동보호 관련 담당국장

3.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아동보호 관련 담당국장
 4.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5.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기관·시설의 장
 6.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 ④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시의 아동학대 예방담당 사무관이 된다.
-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⑧ 위원회는 안전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소속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등 관련기관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⑨ 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⑩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제24조에 근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14조(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① 법 제2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아동학대사례를 판정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에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이하 "사례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장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정례적인 회의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시장은 사례판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 (홍보)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 1회 이상 반상회보, 신문, 유선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아동학대 유형과 증감추이, 처리결과 및 대책, 아동학대신고요령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8 |
|----------|----|

제출연월일 : 2010. 8. 19.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시정시책에 대한 자문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대안제시 갈등요인 해결 등 지역 원로들의 고견을 수렴하는 기능의 시민원로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민원로회의는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안 제2조)
-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나. 시민원로회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원로회의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원로회의의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원로회의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서기는 자치행정담당사무관이 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원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원로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이하“원로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등) ① 원로회의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원로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원로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 ① 원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행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원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원로회의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2010-10-18 조례 제 4852 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6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69 |
|----------|----|

발의년월일 : 2010. 10. 4.

발 의 자 : 곽수천 의원의 7인

1. 제안이유

- 가. 종래 도시균형발전기금의 주요재원인 도시계획세가 2011년부터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도시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나. 도시균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법제처 2009. 12)에 따라 조례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25조).
- 나. 사업지구의 지정고시, 대상지역 및 기준, 사업계획의 수립,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을 정비함(안 제5조부터 제9조).
- 다. 사업시행방식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 라.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재원을 규정함(안 제13조).
- 마.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6조부터 제25조).
- 바. 기금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역간·자치구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균형발전사업”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 지역간 또는 자치구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자치구편의시설확충사업,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사업, 도시재생사업을 말한다.
2. “자치구편의시설확충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문화·교육연구·운동·복지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

나.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다. 수자원 및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관광기능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라. 그 밖에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자치구의 정체성과 도시·마을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역사·문화·예술적 특성의 극대화·차별화가 필요한 지역

나. 자치구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창의적인 계획을 갖고 도시·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지역

다. 그 밖에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

4.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기능 및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증진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 환경, 상업, 업무, 관광 및 숙박시설 등의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나. 공공기관 및 주요 시설의 이전 등으로 도심의 기능이 쇠퇴하거나 경기침체 현상 등이 지속되고 있어 도심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다. 도시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라. 그 밖에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

5. “사업지구”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시, 자치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 「주택법」 제8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6.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
7.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도시균형발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도시균형발전의 중장기 계획
2. 자치구간 불균형 실태 조사·분석·평가
3.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 가. 자치구 재정
 - 나. 주거환경정비
 - 다. 문화·체육·복지·교육
 - 라. 산업·경제
 - 마. 그 밖의 기반시설
4. 도시균형발전사업의 발굴 및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
5. 그 밖에 도시균형발전사업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제5조 (사업지구 지정) ① 시장은 지역간·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계획도서 및 사업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정 대상지역 및 기준) ① 시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2. 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적정성
3. 재원확보와 조달계획의 타당성
4. 자치구 및 주민의 추진의지
5. 자치구간, 생활권역별 형평성
6. 혐오시설 및 주민기피시설 설치 필요성
7. 그 밖에 다른 사업과의 관계

제7조(사업지구 지정고시 등) ① 시장은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전광역시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사업지구의 관할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고시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도시

균형발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주민사업설명회 등의 주민참여절차를 거쳐 수립된 주민의견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사업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
2. 사업지구의 지정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5. 도로·공원·학교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의 범위에서 해당 관할지역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의 효력 상실) ① 제7조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세부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다음날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에는 이를 대전광역시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시행방식) ① 도시균형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2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 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 시장은 중복투자를 억제하고 통일성 있는 도시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자치구 관할구역에 걸치는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광역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시행절차)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구청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각의 사업시행절차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해당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배치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목적과 기능,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균형 있게 분산·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관광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별·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 도시균형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대전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그 밖에 보조금 등으로 한다.

제14조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 부담) ① 도시균형발전사업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 또는 자치구가 부담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그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를 균등 분배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지원) 시장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도시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각종 사업시행에 관한 절차와 업무협의 등의 대행과 필요한 정보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변경·고시에 관한 사항
3. 세부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지원대상 및 범위결정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배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시 및 자치구 소속 업무관련 공무원
3.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도시균형발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재생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기금의 2010 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은 대전광역시 일반회계에 귀속된다. 다만, 이월 또는 계속되는 사업 등으로 인한 기금의 잔액 및 이자수입 등은 사업집행이 종료한 때에 일반회계에 귀속된다.

④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48 |
|----------|----|

발의연월일 : 2010. 10. 5.

발 의 자 : 이은주·서동욱·류경민·천병태·한동영
김진영·이은영·박래환·하현숙·이재현
이선철·정찬모의원(12명)

1. 제안이유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설주관기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사전검사 대상 및 사전검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5조)
- 다. 적법하고 효율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검사요원의 구성 및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라. 사전검사요원의 의무적 교육 및 효율적인 설치를 위한 사전검사 결과보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9조·제10조)
- 마. 원활한 사전검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 및 시설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2조)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 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않은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란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4. “설치지도”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사전검사를 포함하여 시설주 등에게 지도, 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설주관기관의 책무)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관련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검사와 관련된 장애인 등의 참여 증진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검사 대상)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제3호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다만, 우선검사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전검사 방법)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사전검사요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1명과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사전검사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설치지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편의 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① 시설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15명 이내로 위촉한다.

1. 시설주관기관이 임명한 사람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사전검사요원이 사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시설주관기관은 사전검사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등) 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히 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사전검사요원의 교육이수) 사전검사요원은 시설주관기관이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검사 결과보고) ① 사전검사요원 중에서 책임자를 공

무원으로 하고,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4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설주관기관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시설주관기관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검사할 경우 사전검사요원 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63 |
|----------|----|

발의연월일 : 2010년 9월 일
발 의 자 : 송순택 의원 등 43명

1. 제정이유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 의원 또는 시·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장애가 없는 의원과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구분없이 동일한 수준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렇지만 중증장애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안고 있는 현실이므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등의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정상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며 이에 그 지원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1-1 수정이유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조례안의 내실있

는 운영과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와 지원범위 조문을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및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정의(제2조)
나. 지원신청(제3조)은 해당 중증장애 의원이 도의회의장에게 신청
다. 지원범위(제4조)에 의정활동 보조인력(중증장애 의원 1인당 1명 이내)과 중증장애 의원의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조치 등 규정

경기도조례 제 호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경기도의회 의원 중 장애인 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도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 이라 함은 제1호에서 정의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부터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 의원의 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배치시 우선적 고려 등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50 |
|----------|----|

발의연월일 : 2010. 10. 5.

발 의 자 : 송주호, 이호균, 양영복, 강우석,
유근기, 함채규, 성해석, 조재근,
허강숙, 강성휘, 송대수, 정환대,
이동권, 서정창, 윤시석, 정우태,
김 탁, 장 일, 박철홍, 홍이식,
김재무, 이기병, 김한중, 정정섭,
임홍빈

1. 제안이유

- 가. 도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적응과 정착을 위한 도의 지원 시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나.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도지사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무부지사,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광주지방노동청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4.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 | | | |
|--------------------------------|----|----|
| 1. 국가·지방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 —— | 73 |
| 2. 국가기록원, ‘찾아가는 기록문화학교’ 운영 | —— | 75 |
| 3. 다시 살아난 결핵과의 전쟁 | —— | 76 |
| 4. 한국, 특허생산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 | —— | 78 |
| 5. 정부입법추진현황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 | —— | 80 |
| 6. 2011년부터 대학 교육역량 인증제 본격 실시 | —— | 82 |
| 7. 충남 당진군, 맞춤형비료 정책 평가에서 대상 수상 | —— | 84 |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Ⅹ 국가·지방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동시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11월 10일, 6·7급 정원 통합운영,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인정 확대, 엄정한 시보 제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동시에 입법예고 했다.
- 이번 개정은 국민들을 직접 대하는 일선 실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무원 채용시 자질 검증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먼저,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원이 없어서 승진이 불가능했던 우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재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15% 이내에서 승진임용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른 승진기회를 부여했다.
- ※ 현재 7급 12년 이상 재직자는 국가직 1,447명, 지방직 6,573명으로, 시행 첫 해에 총 1,606명 승진 가능(국가직 290명, 지방직 1,316명)
- 또한, 공직사회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보다 앞장 설 수 있도록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확대했다.

- 현재 육아휴직기간은 자녀당 3년까지 가능하나, 재직기간으로는 **1년만 인정**하고 있어
 - 통상적으로 재직기간이 짧은 가임기 공무원은 장기간의 육아휴직 사용시에 승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 향후 셋째 자녀부터는 모든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는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 다자녀 공무원들이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 한편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보임용 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간의 시보임용기간 중 교육·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소속 장관 책임하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지방은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 그 외, 개별 직위의 업무활동·직무수행요건과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역량·경력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시행하도록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정비했다.
- 또한, 전문 회계인력 선발을 위한 회계직류를 신설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국가 회계 선진화를 지원한다.
- 입법예고는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행정

안전부(인사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공무원 단체 및 일선·실무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좀더 봉사하며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배경을 설명하고,
- “시보 제도 엄정관리 운영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국가기록원, ‘찾아가는 기록문화학교’ 운영

— 원하는 초등학교 직접 방문, 체험교실 운영—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경옥)은 11월 8일부터 한달간 대전시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록문화학교’를 운영한다.
- ‘찾아가는 기록문화학교’는 기록의 생활화와 기록 문화의 확산을 위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한다. 체험대상은 모두 22개 학급으로 비교적 체험 기회가 많지 않은 특수학급이나 지역 등을 우선 선발했다.

□ ‘찾아가는 기록문화학교’는 초등학생이 스스로 직접 죽간*을 만들어 쓰고 싶은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발표해 보도록 함으로써 기록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죽간 : 종이가 없던 옛날에 기록을 위해 대나무 대를 잘라 엮은 대나무 책

□ 이경옥 국가기록원장은 “<찾아가는 기록문화학교>가 어린이들에게 일찍부터 기록을 소중히 여기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기록문화가 생활 속에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행사의 소감을 밝혔다.

0 다시 살아난 결핵과의 전쟁

- 결핵 치료제의 특허출원동향 -

결핵균은 1882년 독일의 로버트 코흐(Robert Koch)가 발견하였는데, 1921년 백신으로 BCG가 개발되면서 결핵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1944년 최초의 결핵치료제 스트렙토마이신이, 이후 효과적인 치료제가 속속 개발되면서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줄어들었다. 적어도 1986년까지는.

그러나 1986년, 결핵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사망자 수가 갑자기 증가했다. 30년 만의 일이었다. 1986년 이래 결핵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무언가가 변했다. 기존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등장한 것이다.

급기야는 2000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160만 명에 이르렀고, 2004년에는 200만 명을 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작년도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4.7%였는데 인구 10만 명당 환자가 90명, 사망자가 10명으로 유병률과 사망률에 있어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일반적으로 결핵은 다수의 약물을 동시에 투여하는 소위, 콕테일 요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대부분은 이소니아지드 등 1차 치료제 4종을 6개월간 투여하면 완치되었고, 재발하더라도 가나마이신 등의 2차 치료제를 6개월간 투여하면 완치되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투약을 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용했던 1차, 2차 치료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증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성균이 결핵환자가 증가 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내성결핵 환자의 사망률은 26%에 달하는데 2008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40~50만 명이 내성결핵 환자가 증가하였고, 사망자도 15만 명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내성결핵 환자 수가 1년 전보다 16.6%나 증가하였다.

내성결핵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결핵치료제 개발도 다시 활발해져 1998년 사노피-아벤티스사의 리파펜틴(rifapentine)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으로부터 내성결핵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 다수의 물질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다. 또한, 감염 후의 치료나 면역학적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치료용 백신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 자료에 의하면, 결핵치료제 관련 특허는 1959년 이후 지금까지 108건이 출원되었는데 이중 60%에 해당하는 66건이 2000년대에 들어 출원되었다. 이는 2000년 이후 내성결

핵환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해서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결핵치료제 관련 출원건수도 2000년대에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출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합성화합물이 36%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 비중도 38%로 높았다. 이는 내성균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바이오 치료제가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밖에 한약재나 식물추출성분을 이용한 천연물 치료제도 시도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내성 결핵균의 출현으로 인류는 다시 항생제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결핵관련 의약품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에 내성 결핵뿐만 아니라 결핵 자체를 영구히 퇴치할 수 있는 강력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수도 있지 않을까도 기대해 본다.

0 한국, 특허생산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 - R&D 국제공조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 -

우리나라가 특허생산성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R&D 분야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최근 발간한 “2010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08년 기준으로 GDP 10억 달러당 특허출원건수는 102.6건, R&D 비용 100만 달러당 특허출원건수는 3.3건으로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특허출원 절대규모는 '05년 이후 4년 연속으로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 R&D 협력활동은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PCT 국제출원 중 외국 연구자를 포함하는 출원 비율은 전체 국제출원의 5.4%에 그쳐 세계 19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R&D 활동의 특허생산성은 높은 수준이나, R&D의 국제화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연구환경의 국제화 추세 및 외부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추세를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한 통계로 보인다.

한편, 상표출원의 경우 우리나라는 '08년 기준으로 GDP 10억 달러당 상표출원건수는 86.7건으로 세계 2위, 인구 백만명당 상표출원건수는 2,211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상표출원은 137,461건을 출원하여 중국(669,088건), 미국(294,070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디자인 출원 역시 56,750건으로 중국(312,904건), 유럽공동체상표청(78,050건)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재산 관련활동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8년 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2009년 이후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지식재산분야 역량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분야 양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핵심·표준특허 확보와 기업의 지재권 경영을 지원하는 등 우리 지재권의 질적 수준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수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비용 및 절차의 부담경감,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의 노력경감 등을 목적으로 제정.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제출원제도, 국제조사제도, 국제예비심사제도, 국제공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㉞ 정부입법추진현황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

- 법제처(처장 정선태)가 미국 애플(Apple)사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인증절차를 마치고, 11월 5일(금)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입법추진포털 서비스(정보명:입법추진포털)를 본격 개시한다.
- “입법추진포털”이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을 소관부처에서 진행하는 입안단계부터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단계, 국무·차관회의, 국회 처리단계 및 공포단계까지 입법절차 전 과정에 걸쳐 법안처리 이력과 법안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관보에 고시되어 진행 중인 입법예고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이번 서비스 개시로 아이폰 사용자들은 2010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 총 722건에 대한 입법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볼 수 있고, 현 정부에서 서민생활 지원, 경제활력 회복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점 관리법안의 추진현황만을 별도로 볼 수 있으며,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되거나 처리된 법률안 총2,665건의 처리 현황을 연도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매일 관보를 통해 고시되는 입법예고를 입법추진포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 및 기업에게 법령의 입법예고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 ‘스마트 법률정보(생활법률정보)’ 앱을 서비스하고 있어 ‘입법추진포털’과 함께 종합적인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법제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일반 PC 뿐 아니라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㉔ 2011년부터 대학 교육역량 인증제 본격 실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의 운영 전반을 심사하여 인증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대학 평가·인증 인정기관」(인정기관)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를 11월 11일부터 5년간 지정한다고 밝혔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제출한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를 지난 11월초까지 인정기관의 인프라,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평가·인증 실적의 활용 측면에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위원장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의 심사를 거친 바 있으며,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최종 확정하여 **인정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 대학의 교육역량인증제는 고등교육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자율적 질 관리 및 책무성 강화 요구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 정부로부터 지정된 인정기관은 대학이 스스로 실시한 자체평가를 토대로 대학운영 전반 또는 교육과정(학부, 학과, 전공)을 인증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대학을 평가·인증하는 인정기관은 지역단위 6개 기관을 포함해 80여개가 활동하고 있다.
-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인정기관(대교협)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 200개 교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인증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인증심사가 마무리되는 2014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일반학자금 대출, 대학 연구간접비 산정 등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시 각 대학의 인증심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 대교협이 평가·인증을 위해 제안한 인증기준은 필수평가
준거와 일반평가영역으로 나누어지며,

- 필수평가준거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활용하여 설정하였고,
일반평가영역은 대학사명·발전계획, 대학 구성원, 교육, 교
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6개 영역에 17개 부문별로
총 49개의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

* 전임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 대교협의 일반평가영역 >

| 영역 | 부문 | 준거 (개수) |
|---------------|---------------------------|-----------|
| 1. 대학사명, 발전계획 |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발전계획 및 특성화 등 | 4 |
| 2. 대학 구성원 | 교수, 직원, 학생 | 12 |
| 3. 교육 |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사관리, 교육성과 | 17 |
| 4. 교육시설 | 교육기본 시설, 교육지원 시설, 도서관 | 7 |
| 5. 대학 재정 및 경영 | 재정 확보, 재정 편성 및 경영, 감사 | 7 |
| 6. 사회봉사 | 사회봉사 | 2 |
| 6개 영역 | 17개 부문 | 49 |

- 대교협은 상기 6개 필수준거에 대한 최소요구수준(80%(전임
교원확보율의경우는 요구수준 61.0%의 81.96% 수준인 50.0%
를 적용))의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6개 일반평가영역을 정성
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대학을 평가·인증하기 위한 상세한 인증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교협이 11월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⑩ 충남 당진군, 맞춤형비료 정책 평가에서 대상 수상

-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기반 실천 조성을 위해 「맞춤형비료 정책평가」에서 선발된 우수 기관 및 유공자 등에 대한 시상을 11월 9일(화) 「흙의 날」 기념식행사가 열리는 농협중앙회 대강당 (서울 중구 충정로 소재)에서 수여한다.
- 맞춤형비료 시상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여 친환경농업실천 기반 조성을 위해 맞춤형비료의 조기정착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헌한 지자체·농협·개인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 2010년 「맞춤형비료 정책평가」에서 지자체부문 대상은 충남 당진군이 선정되었으며, 농협 부문 대상은 전남 구례군 산동농협이 차지하였다.
- 충남 당진군은 금년 9월말기준 맞춤형비료 사용 점유비율이 91.3%(관행복합비료 1,307톤, 맞춤형비료 13,741톤)를 차지해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 자체 시군비(2,138백만원)를 맞춤형비료지원에 투입하여 조기정착에 기여하는 등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 충남 당진군은 2010 “해나루쌀” 명품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10.10월 제14회 전국쌀사랑음식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음
- 전남 구례군 산동농협은 영농회별 전량 예약신청을 받아

복합비료 사용량의 92.9%를 맞춤형비료로 공급하였으며, 맞춤형비료 사용으로 기존의 관행복합비료 대비 사용량이 15~20% 절감하고, 비료대 20%절감 등의 기록으로 **농협분야의 대상**을 수상한다.

- 지자체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1천5백만원, 농협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5백만원 등 장관상 28점 및 시상금 9천7백만원이 수여된다.

□ **농민신문사·한국토양비료학회·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제11회 흙의 날』 기념식(1부행사)에서 시상식을 갖게 된다(시상식 개최계획 : 붙임3)

- 2부행사(제14회 『흙을 살리자』 심포지엄)에서는 흙을 살리는 맞춤형비료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대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정부는 '10년부터 과거의 일률적인 화학비료 가격보조 대신에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화학비료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작물과 영양이 필요로 하는 영양성분(질소, 인산, 칼리)에 맞는 맞춤형비료(31종)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맞춤형비료 : 토양검정결과와 양분수지를 감안하여 토양환경에 맞게 성분을 배합한 비료로 관행비료보다 일반성분(질소·인산·加里) 함량이 낮고 토양에 부족한 미량성분은 보강

* '10년 맞춤형비료 지원(31종) : 731억원(821천톤, 평균1,800원/20kg포대당)

- 금년 맞춤형비료제도 도입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이 11.5% 절감**되고, 맞춤형비료 판매가격이 전년동기 관행 복합비료 가

격보다 30.6% 인하 되어, 화학비료 농가부담액은 2,806억원이 절감되었다고 밝혔다.

* 판매가격 : 관행복합비료 16,994원/20kg → 맞춤형비료 11,800(△30.6%)

* 화학비료 사용량 : ('09) 1,130천톤→('10.P) 1,000천톤(△11.5%)

* 화학비료 절감액 : ('09) 9,315억원→('10.P) 6,509억원(△2,806억원)

○ 또한, 맞춤형비료는 대리점 등을 통하지 않고 농가에 직공급 됨에 따라 유통구조가 단순화되어 유통비용 절감액은 연간 164억원(맞춤형비료 82만톤 판매시)으로 평가되는 등 농가 경영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맞춤형비료 시상을 통하여 지자체, 지역농협 등 관련기관·단체의 관심을 적극 유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맞춤형비료의 조기정착 및 성공적 추진에 크게 공헌했다고 밝혔다.

<참고 1>

2010년도 광역시·도 제정조례안 현황 (1월~ 10월말까지)

| | 제 명 | 발의자 | 제정일 |
|----|--|----------|-------|
| 총계 | 87건 | | |
| 1 |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강감찬의원외11 | 10.19 |
| 2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 강희용의원외17 | 10.19 |
| 3 |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시장 | 9.10 |
| 4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강희용의원외52 | 9.10 |
| 5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 시장 | 9.10 |
| 6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나재암의원 | 6.30 |
| 7 |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안 | 시장 | 6.30 |
| 8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시장 | 6.30 |
| 9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안 | 김광현의원외13 | 4.1 |
| 10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광현의원외13 | 4.1 |
| 11 |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시장 | 4.1 |
| 12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교육감 | 4.1 |
| 13 |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시장 | 2.10 |
| 소계 | 13건 | | |
| 1 |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시장 | 6.30 |
| 2 |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 시장 | 5.7 |
| 3 |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 이해동의원외9 | 5.7 |
| 4 |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시장 | 4.9 |
| 5 |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 시장 | 4.9 |
| 6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 교육감 | 1.28 |
| 소계 | 6건 | | |
| 1 | 대구광역시 더 큰 대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시장 | 9.8 |
| 2 |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안 | 도재준의원외12 | 9.6 |
| 3 |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안) | 이운원의원 | 9.6 |
| 4 |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 교육감 | 7.15 |
| 5 |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 시장 | 6.10 |
| 6 |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안 | 시장 | 4.27 |
| 7 |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정순천의원 | 4.5 |

| | 제 명 | 발의자 | 제정일 |
|----|--|-----------|-------|
| 8 |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박부희의원 | 4.5 |
| 9 |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 도재준의원외1 | 4.9 |
| 10 |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 시장 | 4.9 |
| 11 |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 박부희의원 | 3.12 |
| 12 |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박정희의원 | 3.9 |
| 소계 | 12건 | | |
| 1 |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 이강호의원외15 | 10.29 |
| 2 |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박승희의원외12 | 10.29 |
| 3 |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시장 | 10.1 |
| 4 |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시장 | 9.8 |
| 5 |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시장 | 9.9 |
| 6 |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시장 | 6.15 |
| 7 | 인천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시장 | 6.15 |
| 8 | 인천광역시 자활사업지원 조례안 | 이명숙의원외5 | 4.12 |
| 9 |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김용근의원8 | 3.11 |
| 소계 | 9건 | | |
| 1 |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 조호권의원 | 9.15 |
| 2 |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김보현의원 | 9.15 |
| 소계 | 2건 | | |
| 1 | 대전광역시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 시장 | 10.19 |
| 2 |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곽수천의원외7 | 10.18 |
| 3 |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교육감 | 10.18 |
| 4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시장 | 7.30 |
| 5 |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시장 | 7.30 |
| 6 |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안 | 시장 | 7.30 |
| 7 |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안 | 시장 | 4.2 |
| 8 |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 전병배의원외5 | 2.9 |
| 9 |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안 | 시장 | 2.9 |
| 10 |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시장 | 2.9 |
| 소계 | 10건 | | |
| 1 |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 이은주의의원외11 | 10.20 |
| 2 |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 기김환의원외3 | 6.25 |
| 3 | 울산광역시 지식산업기반 과학기술교육 지원 조례안 | 송미경의원외8 | 4.23 |
| 4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동욱의원 | 4.23 |
| 5 |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 윤종오의원외4 | 2.26 |
| 소계 | 5건 | | |

| | 제 명 | 발의자 | 제정일 |
|----|------------------------------------|----------|-------|
| 1 |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 고영인의원외23 | 10.19 |
| 2 |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 강관희의원외42 | 10.19 |
| 3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 교육감 | 9.17 |
| 4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 교육감 | 8.20 |
| 5 | 경기도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 도지사 | 6.24 |
| 6 |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경호의원외22 | 4.22 |
| 7 |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김광선의원외16 | 4.22 |
| 8 | 경기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 김의현의원외14 | 4.22 |
| 9 |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 | 강석오의원외18 | 3.30 |
| 10 |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강석오의원외14 | 3.30 |
| 소계 | 10건 | | |
| 1 |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안 | 도지사 | 6.17 |
| 2 |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안 | 도지사 | 3.25 |
| 3 |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 김동일의원외15 | 2.25 |
| 소계 | 3건 | | |
| 1 |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김재중의원 | 10.20 |
| 소계 | 1건 | | |
| 1 |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조병서의원외6 | 9.16 |
| 2 |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김운덕의원외17 | 6.21 |
| 3 |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이상현의원외11 | 3.19 |
| 4 | 전라북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김병운의원외17 | 2.26 |
| 5 | 전라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 김병근의원외13 | 2.26 |
| 소계 | 5건 | | |
| 1 |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송주호의원외24 | 10.21 |
| 2 | 전라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임흥빈의원외12 | 4.3 |
| 3 |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 강석우의원외9 | 3.5 |
| 4 |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육성 조례안 | 신윤식의원외9 | 1.28 |
| 소계 | 4건 | | |
| 1 |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조례안 | 도지사 | 6.21 |
| 2 |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장경식의원외11 | 4.8 |
| 소계 | 2건 | | |
| 1 |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 | 김해연의원외2 | 5.12 |
| 2 | 경상남도 인권증진 조례안 | 공영운의원외2 | 3.11 |
| 소계 | 2건 | | |
| 1 |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성곤의원 | 9.20 |
| 2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오정희의원 | 6.22 |
| 3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 현우범의원 | 4.2 |
| 소계 | 3건 | | |

<참고 2>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역사에서 리더를 만나다

저자명 : 유필화

출판사 : 흐름출판

출판년 : 2010년

페이지 : 368

가 격 : 16,000원

모든 조직들이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지닌 젊은 세대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조직의 리더 사이에서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다. 한마디로 리더십의 위기 시대인 것. ‘섬기는 리더십을 펼쳤더니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카리스마 리더십을 펼쳤더니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권한을 집중했더니 시너지효과는 있으나 조직이 경직되고 관료화된다’, ‘변화에 맞춰 혁신을 시도하니 현상 유지는커녕 회사의 존속이 위협받는다’ 등, 이 외에도 조직을 이끌다보면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리더들은 현명한 타협안을 도출해야 하는 문제를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다.

그러한 고민에 가장 확실하고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역사에서 리더를 만나다』이다. ‘속도와 무한경쟁의 시대,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역사적인 리더 11인은 상황과 사람에 맞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리더십이 현실적이라며 “때로는 관대하게 때로는 냉엄하게”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 나갈 진실은 그 어느 것도 완벽한 리더십은 없다. 사람과 상황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며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느 하나의 리더십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모두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며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과 사람에 맞게 리더십도 전략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21세기 조직은 사람과의 관계와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리더십은 현대인의 필수 교양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리더십 교육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MBA 강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분위기에 편승해서 유행하는 리더십을 따르다보면 리더로서 예기치 않은 문제에 봉착해 고배를 마시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이것 아니면 저것’ 식의 상호배타적인 리더십이 아닌 실천적이고 종합적인 리더십 해법을 얻기를 바란다

한비자, 제갈공명, 처칠, 이순신, 이나모리 가즈오, 석가모니 등, 시대를 초월해 대한민국 CEO들이 좋아하는 리더십 대가들의 금쪽같은 메시지와 키워드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인재 풀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리더에 걸맞는 제갈공명 방식

“무릇 장수는 반드시 심복, 이목, 그리고 수족이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부하, 손발처럼 움직일 수 있는 부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뛰어난 부하는 뛰어난 지도자의 필수요건이다.

존중과 신뢰에 바탕을 둔 리더에게 지나친 관대는 오히려 해롭다는 인식을 주는 카이사르 방식

“전우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사령관이기를 원한다. 나만큼 여러분의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전사로서의 명예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사들이 무엇이든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둔다는 뜻은 아니다.(중략) 여러분은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인 이상, 올바른 처신을 망각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되 규율을 갖고 엄하게 하라는 이나모리 가르오

인기에 영합하는 것은 부하를 소선으로 이끄는 것이고, 규율을 갖고 엄하게 단련시키는 것은 그들을 크게 키우는 것이다. 이나모리 가르오는 “대선은 비정(非情)과 비슷하고 소선은 대악(大惡)과 비슷하다”라고 말한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에 술(術)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는 한비자

‘술’에 의거해 다스리면 단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세상이 잘 굴러간다. 하지만 술을 쓰지 않으면 몸이 으스러지도록 애써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 다시말해 “군주는 권력의 핵심만 쥐고 있으면 된다. 신하에게 맡기면 되는 것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면 졸음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이다.

현장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 처칠

처칠은 폐렴이 재발하여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갔지만, 그 일주

일 후에 루스벨트를 만나기 위해 다시 먼 여행을 떠난다. 그의 나이가 68세의 노인이었다. 그는 런던에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안전한 곳으로 서둘러 대피하지 않고 폭격 장면을 보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다. 또한 그는 1944년 6월 6일에 감행된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직접 참여하려 했으나 왕 조지 6세까지 만류하는 바람에 이 계획을 접었다. 그는 실제로 현장에서 쿵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전쟁의 위험과 모험을 공유하고 싶어했다. 더불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쓴 것이다.

이렇듯 이 책에 등장하는 역사 리더 11인의 명철한 카운슬링에 귀기울이면 리더로서 당신의 행동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바람직한 대안을 얻을 수 있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

의 정 정 보

- ❖ 발행일 : 2010년 11월 10일
- ❖ 발행처 : 충청남도의회 법제자료담당관실
법제자료담당관 : 홍민표
법제자료담당 : 조남명
자 료 편 집 : 최성민, 신의식, 안가영,
박광일, 이종섭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전화 (042)606-5029 / 팩스 (042)606-5029